

##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운영 규정

제 정 : 2024. 12. 27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의 산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학협력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“산학협력단 특임교수”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라 함은 산학협력단에 소속하는 자로서 총장이 계약직으로 위촉하는 교수를 말한다.

**제3조(자격)** 산학협력단 특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국내·외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동 기관에서 연구책임자로 외부 산학과제를 수행한 자
2. 산학협력 관련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관련 분야에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
3. 산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실무경력이 탁월하며 산학협력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가 가능한 자
4. 산학협력 및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

**제4조(소속 및 복무)** ① 산학협력단 특임교수의 소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한다.

②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는 산학협력단장의 지휘에 따라 소정의 프로젝트 수주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위촉)** ① 산학협력단 특임교수의 위촉은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산학협력단 특임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재위촉시 산학협력단장의 성과 평가 후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6조(구비서류)** 특임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1. 이력서 (별지서식 1)
2. 최종학력증명서 1부
3.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4. 추천서 (별지서식 2)
5. 공적개요서 또는 연구경력개요서 (필요시)

**제7조(처우)** ①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의하여 자문·특별강의·관련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**제8조(면직)** ① 산학협력단 특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에게 중도에 계약 해지하거나 면직을 요청 할 수 있다.

1. 특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계약의 해약이나 기간의 종료
2.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때
3. 본 대학교의 위신을 손상시킬 때
4.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
5.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본 대학교 발전에 지장을 초래 한 때

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, 당연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.

1. 본인 사망 또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교육공무원임용령,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교원 당연퇴직 및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**제9조(규정개정)**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(기타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1)

## 이 력 서

### 1. 인적사항

(사 진)	성 명		국적		
	생년월일	19   년   월   일 (만   세)	주민등록번호		
	현주소				
	현근무지				
	연락처	자택			
		이동전화			
		직장			
		이메일			

### 2. 학력사항

구분	기간	학 교 명	학 과 (세부전공)	학위 취득일	학위등록번호
학사					
석사					
박사					

### 3. 연구실적

발표구분	저자명(전원)	제 목	계제지명	발행기관	발표 년월일



(별지서식 2)

###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추천서

성 명	(한글)	(한자)	(영문)		
국 적		생년월일		성별	
현 소 속		직위		연락처	자택: 회사: H.P:
현 주 소					
전공분야					
희망임용기간					

위와 같이 특임교수를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산학협력단장 \_\_\_\_\_ (인)

금강대학교총장 귀하

(별지서식 3)

##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임용계약서

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장(이하“갑”)과 \_\_\_\_\_(이하 “을”) 은 특임교수 임용에 따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1. “갑”은 “을”을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로 임용한다.
2. “을”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3. “을”은 명예직으로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, 필요에 의하여 자문·특별강의·관련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또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프로젝트 수주시 간접비 총액의 10% 범위 내에서 평가에 따른 연구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4. “갑”은 “을”이 계약기간 중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5.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계약에 명시한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6. “을”은 계약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한다.
7. “갑”은 “을”이 법령, 규정 또는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체, 정신적 사유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8. “갑”은 계약조건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을”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변경(계약기간 제외)할 수 있다.
9.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특임교수 규정에 따르며,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(갑)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   (을) 성 명 : \_\_\_\_\_(인)

\_\_\_\_\_ (인)

(별지서식 4)

제 20 - 001 호

# 위 촉 장

소 속 :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
성 명 :

귀하를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로  
위촉합니다.

(기간 : 20 . . . ~ 20 . . .)

년 월 일

금강대학교 총장